

# 6.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1999. 3. 12.

## 개정 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02호)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저한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종전에는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1항제3호).
- 나.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도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7조, 현행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 다.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이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3항).

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주차대수 5대이하에서 8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함(제11조제4항제2호).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본문중 “법 제12조제1항·제3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영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전단중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을 “부설주차장은”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4대이하”를 “5대이하”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